

## CONTACT



변호사 김운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mailto:unho.kim@leeko.com)

변호사 이은우

T: 02.772.4334  
E: [eunwoo.lee@leeko.com](mailto:eunwoo.lee@leeko.com)

변호사곽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mailto:jaewoo.kwak@leeko.com)

## 데이터 및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의 부정사용 및 유명인의 초상, 성명과 같은 인적 식별표지에 대한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단,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에 대한 무단사용 금지 조항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가. 개정의 배경

현행법상 '비공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공개된 데이터 중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였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와 거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현행 제2조 제1호 (카)목)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유통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이에 국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여(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3항) 이번 개정법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나.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 형사상의 청구권 명시

개정법은 법에서 보호하는 데이터를 "데이터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취득),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신의칙 위반),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악의적인 전득),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자에 대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조치(제4조, 제5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형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제18조 제3항), 나머지 유형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2.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가. 개정의 배경

최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거나 그에 관한 투자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불법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본 법무법원이 수행했던 일명 ‘BTS 무단화보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BTS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유사 화보집과 포토 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쌓아 올린 소속 아티스트의 명성, 신용 및 고객흡인력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성과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이 대법원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독립적인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나.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보호 위한 민사상 청구권 명시

개정법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신설하여, 법에서 보호하는 인적 식별표지를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정의하면서, 인적 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제4조, 제5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제18조 제3항).

### 3. 평가와 전망

이번 개정법의 취지는 현행법상 보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보충적 일반조항을 통하여서만 보호가 가능했던 비정형 데이터 및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데이터 부정사용이나 인적 식별표지에 대한 무단사용으로 피해를 입던 업체나 유명인 입장에서는 개정법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간명하고 적극적인 피해 방지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크롤링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데이터를 수집·사용하거나 타인의 초상·성명 등을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 방식이나 기법이 개정법상 신설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는 등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 작업을 수행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신설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요건은 보충적 일반조항인 현행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관하여 기존 판례에서 실시했던 요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각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판단요소, 판단기준 등에 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례적인 법리와 판례를 앞장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및 컴플라이언스에 관하여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